

# 예산총칙

2017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| 887,629,407 | 26,628,882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| 756,577,260 | 22,697,318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| 131,052,147 | 3,931,564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| 107,180,864 | 3,215,426  |
|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     | 52,283,714  | 1,568,511  |
|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     | 54,897,150  | 1,646,915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| 23,871,283  | 716,138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| 4,055,402   | 121,662  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| 49,096      | 1,473      |
|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     | 656,167     | 19,685 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| 125,303     | 3,759     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        | 2,530,329   | 75,910     |
| 농공단지특별회계         | 4,263,326   | 127,900    |
|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 | 47,400      | 1,422     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      | 3,134,000   | 94,020     |
|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     | 47,000      | 1,410 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| 879,000     | 26,370     |
|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    | 8,084,260   | 242,528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571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